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5항제1호 중 “대학,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”을 “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”으로 하고, 제3호 중 “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”을 “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”으로 하고, 제4호 중 “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”를 “각 30퍼센트 미만인 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30퍼센트 범위에서”로 하고, 제5호 중 “(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”를 삭제하고, 제7호 중 “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. 다만,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”를 “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. 단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차입비율이 30퍼센트 미

만인 경우에 한한다”로 하며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증여·교환, 담보제공, 용도변경,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1년 내에 동일 건을 재신청하는 경우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를 “제1항 각호의”로 하고, 제2호 중 “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를 “학교 간 통·폐합을 하려는 경우로서 통·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각 호의”로 하고,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동일한 유형의 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로서 이 때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. 다만 재산 취득의 과정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.

6. 그 밖에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재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1조(기본재산의 처분) ① ~ ④ (생략)	제11조(기본재산의 처분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·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1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 제1항 및 「사이버대학 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<u>대학,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</u> 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</u> 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	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		

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
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
산의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
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
5천만원미만(대학 또는 산업
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
경우는 3억원미만)인 경우

4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 회계·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 29조제3항에 따른 일반업무회 계(이하 이 항에서 “교비회계 등”이라 한다)의 기본금(총자 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 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 으로 투입·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)에 대 한 총 차입금(차입하고자 하 는 차입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비율(이하 이 항에서 “차입비율”이라 한다)이 각 20 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 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 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 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 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

3. -----

(대학, 산업대학,
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
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
5억원 미만)-----

4. -----

----- 각 30
퍼센트 미만인 대학, 산업대
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
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
비율 각 30퍼센트 범위에서--

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
의 범위에서 금융기관(「금융

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)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

5. 대학·산업대학·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「한국사학 진흥재단법」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(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

6. (생략)

7.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(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. 다만, 의

5. -----

경우

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 -----(대학, 산업대학,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

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인 경우

8. (신 설)

제12조(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.

1.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

5억원 미만. 다만,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이거나 차입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인 경우

8. 기본재산의 매도·증여·증여·교환, 담보제공, 용도변경,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1년 내에 동일 건에 대한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제12조(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제1항 각 호의 -----

2.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

3. ~ 4.(생략)

5. (신 설)

6. (신 설)

③ (생략)

2. -----

----- 학교
간 통·폐합을 하려는 경우로
서 통·폐합으로 용도가 폐지
되는 제1항 각 호의 -----

3. ~ 4.(현행과 같음)

5.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
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
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
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로서
이 때 매도 또는 담보로 제공
하려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재산. 다만 재
산 처분 및 취득의 과정에서
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
경우에 한한다.

6. 그 밖에 학교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으로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재산

③ (현행과 같음)